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주환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5636 발의연월일: 2022. 5. 17.

발 의 자:이주환·권명호·김기현

김예지 · 김용판 · 박대수

안병길 · 양금희 · 이헌승

지성호 · 홍문표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고용노동부장관은 구인·구직 정보 및 고용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고용정보시스템(워크넷)을 운영하고 있음. 또한, 현행법은 워크넷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법원·보건복지부·행정안전부 등 관계 행정기관에 자료 제공과 관계 전산망 이용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에 고용노동부장관은 법무부로부터 외국인 구직자의 출입국 정보를 수집하고 있으나, 체류 자격·기간 등의 정보는 구직자가 직접 제출하는 정보에 의존하고 있음.

이로 인하여, 체류 자격이 없는 외국인 구직자가 체류 자격이 있는 것으로 워크넷에 잘못 등록되어, 「출입국관리법」에 따르면 취업활동 을 할 자격이 없는 외국인 구직자에게 직업안정기관이 취업 알선을 제공하고, 해당 구직자가 취업을 한 사례가 발생하였음.

이러한 사례를 방지하기 위하여, 법무부로부터 외국인등록번호·체류자격 등 외국인등록 자료를 워크넷에 직접적으로 제공받아 외국인 구직자의 체류자격을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사업주의 피해를 예방하고자 함(안 제15조의2제3항제9호 신설 등).

법률 제 호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의2제2항 전단 중 "보건복지부"를 "법무부·보건복지부"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9호부터 제13호까지를 각각 제10호부터 제14호까지로 하며, 같은 항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외국인등록 자료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5조의2(고용정보시스템의 구	제15조의2(고용정보시스템의 구
축·운영) ① (생 략)	축・운영) ① (현행과 같음)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②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법원 · <u>보건복지부</u> · 행정안전부	<u>법무부·보건복지부</u>
•국세청 등 관계 중앙행정기	
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관	
련 기관・단체의 장에게 자료	
제공 및 관계 전산망의 이용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의 제공 등을 요청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	
에 따라야 한다.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항에	③
따라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수	
집 • 보유 • 이용할 수 있다.	
1. ~ 8. (생 략)	1. ~ 8. (현행과 같음)
<u><신 설></u>	9. 외국인등록 자료
<u>9.</u> ~ <u>13.</u> (생 략)	<u>10.</u> ~ <u>14.</u> (현행 제9호부터 제
	13호까지와 같음)
④ ~ ⑥ (생 략)	④ ~ ⑥ (현행과 같음)